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1552

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2일 유만희 의원외 18명

2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3. 상정일자 :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2월 2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유만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수 있는데,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.
-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'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 주' 조건을 삭제함.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)

○ 입법예고 (2024.2.14.~2.18.) 결과 : 의견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중 서울시에서 일정기간(6개월)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 변경 (안 제4조의4)

 동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'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하여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주 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 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	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
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	
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	
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	
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1. 신청일을 기준으로 <u>6개월 이</u>	1 <u>서울특별</u>
<u>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</u> 관할	시

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

2. (생략)

② ~ ⑦ (생 략)

<u>거주</u>
하는
· (=1=n 1 -1 A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인 임산부1)의 이동편의 증진 및 임신·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.

임산부교통비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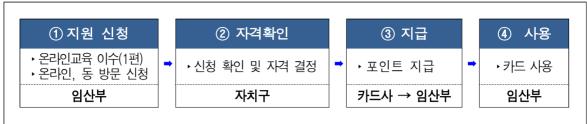
사업대상: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임신3개월 ~ 출산 후 3개월 임산부

o 사업내용: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(사용기한 : 출산 후 6개월)

o 추진체계 : 협약된 신용(체크)카드에 지급 ※협약사:국민,BC,삼성,신한,우리,하나

^{1) 「}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진법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.

^{1. &}quot;교통약자"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

ㅇ 용 도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 이용비, 자가용 유류비, 철도 등

ㅇ 소요예산 : 33,496백만원(시비 100%)

 현행 조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하 여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불가한 사례

- ▶ 서울에 살다가 결혼 후 경기도에 거주한 이OO씨, 임신 후 친정엄마 근 처인 서울시 A구로 전입하였으나 신청 당시 6개월 계속 거주기간이 충 족되지 못해 지원 불가
- ▶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는 임신 중으로 임산부교통비 지원 신청 하였으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해 지원불가
 -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계획인 "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」 48개 사업 중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이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산모부터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음²).

²⁾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(2024. 2. 14.), 보도자료: '서울형 산후조리경비' 6

※ 임산부교통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근거 조례 상에 거주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집행기관 방침상의 제한임.

<「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, 사업 중 거주요건(6개월) 부여 사업 >

시그 시어머		신청자격		
실국	사업명	거주요건	기타 요건	
여성가족 정책실 (2개)	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市 출생신고 출산 후 60일 이내	
	임산부 교통비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이내	
시민 건강국 (3개)	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출산 후 8주 이내	
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	市 6개월 이상 거주	_	
	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	市 6개월 이상 거주	20~49세 여성	

- ※ 거주요건 확인 기준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연속 6개월 이상 거주
 - 또한 "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" 사업 중 5개 사업(서울엄마아빠택시,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・밀키트 할인 지원, 서울형 가사서비스, 서울우먼업 구직지원 사업)은 서울시 거주만으로 지원되고있음.
 - 이에 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원기준에서 '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 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교 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개월이상 거주요건 전격 폐지, 출산맘 몸·마음 챙겨.

다만 바우처의 특성 상 7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어 거주
요건 폐지시 거주지 이동을 통해 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수급할
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
<지자체별 유사사업 추진 현황>

구분			지원기준	금액
서울시	서울시 광역		·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	70만원
인천시	인천시 광역		·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	50만원
경기도 기초	안성	안성	· 신청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50만원
	기초	가평	· 출산일 기준 안성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	30만원
		여주	· 임신확인일 기준 여주시 6개월 이상 거주 ·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	30만원

 이 밖에도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³)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 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,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에서 재정 여력이 높은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 이동 유발,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의 경쟁적 증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측면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사업 운영 시 최소 거주요건

³⁾ 국회예산정책처(2023.11.), "중·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: 3. 저출 산 대응 전략", 예산안분석시리즈Ⅶ.

검토 및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함임.
- 초저출산 상황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출산·양육에 따른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거주조건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 타지자체에서 중복수급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552 발 의 년 월 일: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:유만희, 고광민, 김영철

김용호, 김지향, 김춘고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 석, 박영한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옥재은, 유정인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 [~]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,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 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 가 있음.
- 초저출생 시대 임신·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'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조건을 삭제함.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"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"를 "서울특별시" 로, "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"을 "거주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	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
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	
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	
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	
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	,
1.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	1 서울특별
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	<u>\(\) \</u>
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	
있는 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	
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	
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	
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<u>6개</u>	<u>거주</u>
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	하는
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	
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를 개정 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관련 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	0	다만,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은 분명하나, 현 시점에서 관련 통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하여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에 해당함
 - ※ (관련부서 의견조회)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"6개월 이상 계속하여"를 삭제함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(양성평등담당관)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예산(붙임 참고)으로 추가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손제 승

2 02-2180-7954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2024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 (본 개정안 제4조의4 관련)

□ 사업목적

○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
○ 지원대상 : 임신,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

○ 지원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

○ 지급방식 : 신용(체크)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

○ 바우처 사용 용도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, 철도)이용비, 자가용 유류비 등

○ 소요예산: 33,496,056천원(전액시비)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교통약자인 임산부 교통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사업홍보 , 매뉴얼 제작 등 20,000,000원	=	20,000
사회보장적수혜금(취 약계층, 지방재원)	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0,000원*20명	=	14,000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임산부 교통비 지원 - 22년~23년 미사용자 77,288명*200,000원	=	33,317,559 15,457,559
	- 2024년 사용 대상자 (38,000*94%)*500,000원		17,860,000
	○ 시스템 유지보수 86,497,000원	=	86,497
	○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8,000,000원	=	8,00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사업 홍보 등 2,000,000원*25개구	=	50,000

자료: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설명서 발췌